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황국주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2023. 11. 3.(금)
- 회부일자: 2023. 11. 3.(금)
- 검토기간: 2023. 11. 6.(월) ~ 11. 10.(금)

2. 개정이유

- 급변하는 IT기술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현상을 막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 등을 개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항)
- 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반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3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IT기술과 정보화사회로의 빠른 이행에 따른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현상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달서구는 2021년 정부지원금 9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 10억 2천만 원으로 노인회 달서구지회와 2곳의 노인종합복지관에 스마트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경로당 100개소를 스마트 경로당으로 조성하여 양방향 실시간 화상회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고,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은 세대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노인인구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③(생략)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